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8 ~ 1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08 ~ 14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2008 ~ 15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8 ~ 16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3
----------	-----------

제출연월일	2008. 4.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직제명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별표 1)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름
- 다.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변경함(안 제5조제2호·제5호)
 -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라.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안 제5조제4호)
 -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증빙자료 징구와 장기교육(1개월이상)과정 사비 사용 후 정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마.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적용규정을 삭제하고,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적용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제 4호 중 “영 제18조”를 “영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조제5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6조 및 동규칙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p>	<p><삭 제></p>
<p>제4조 (생 략)</p>	<p>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p>
<p><신 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p>
<p>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생 략)</p> <p>1. (생 략).</p> <p>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3. (생 략)</p> <p>4. 영 제18조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p> <p>5.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행정안전부장관과 -----.</p> <p>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8조의2 -----.</p> <p>5.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6. (생략)</p> <p>7. 영 제8조의 2 및 제16조 중 “정부 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p>	<p><u>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6. (현행과 같음)</p> <p>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p>

[별표 1]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4
----------	-----------

제출연월일	2008. 4.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가축분뇨” 관리에 대하여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주거밀집지역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일정구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
- 다. 가축사육 허가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가축사육 허가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 「수도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3. 24. ~ 4.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2008.4.1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의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을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2의 가축

제4조(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육지 위치도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에 해로움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가축사육자는 허가증을 축사 입구에 걸어 두어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 생활환경에 해로움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해로움을 끼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 고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못안골, 동산 제외), 대평리(들성 제외), 김천리, 송정리(운정, 절부 제외)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 고
거창읍	정장리, 장팔리, 가지리(성산 제외)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구분	규 모	비 고
축제, 군조, 야생조수보호시설 등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말함	야생조수 보호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법 제11조에 준하여 규제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육장소재지	
--------	--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구분 축종	축 사			사 육 두 수			비 고
	부지면적	동 수	건축면적	계	성 축	자 축	

허가기간	
------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5
----------	-----------

제출연월일	2008. 4.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함

-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 보조금(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제94조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제8조)

- ~ 규정에 의한 ⇒ ~ 에 따른
- 각호 ⇒ 각 호
- 타 기금 ⇒ 그 밖의 기금
- 내지 ⇒ ~부터 ~까지

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사무분장에 맞게 개정함(안 제7조)

- 자금출납 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 ⇒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무과장 합의

라.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3. 25. ~ 4.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해”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의 규정을”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를”로 한다.

제3조 중 “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타 기금”을 “그 밖의 기금”으로 하고, 제4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제5조제1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를 자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 115조의 규정을”을 “제94조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낙동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29조 및 제30조에 따라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조(정의)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p>
<p>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3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p>
<p>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생략) 3.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제4조(세입) ----- 각 호----- 1. -----보조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기금-----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p>
<p>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5조(세출) ----- 각 호-----</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입은 손실보상	1. -----에 따른-----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	2. -----에 따른-----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3. -----에 따른-----
4.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지원	4. -----에 따른-----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에 따른-----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6. -----에 따른-----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7. -----에 따른-----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8. -----에 따른-----
9.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9. -----에 따른-----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11. -----에 따른-----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u>그밖에</u>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3. <u>그 밖에</u> -----
제7조(회계공무원의 관직)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산림환경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으로,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를 자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u>제7조의</u> <u>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u> 「지방재정법」 <u>제115조의</u> 규정을 준용 한다.</p>	<p>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u>제7조에</u> <u>따른</u>----- ----- <u>제94조를</u>----- ---</p>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6
----------	-----------

제출연월일	2008. 4.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2007. 9. 28.)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중수도의 설치, 관리, 용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배수설비의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
-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부터 제22조까지)
- 사.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아. 요금의 감면, 할인, 이의신청,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부터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산림환경과 합의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1. 23. ~ 2. 11.) 결과 : 특기할 사항없음
 - (3) 규제심사 : 2008.4.1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

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또는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

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사용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중수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 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광경(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함께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한 후,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5에 따름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때 부과한다.
 -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

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함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하수도법 시행령」·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 수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24시간 내 수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인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수거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에 따름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 함
-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분뇨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시설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의 1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상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밖에() 배제							
	설치위치		읍·면 리 번지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밖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염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m ³)	m ³ 당단가(원)	비고
가정용	1 ~ 20	94	
	21 ~ 30	125	
	31 이상	167	
일반용	1 ~ 30	110	
	31 ~ 50	139	
	51 ~ 100	169	
	101 ~ 300	195	
	301 이상	242	
대중탕용	1 ~ 200	120	
	201 ~ 300	147	
	301 ~ 500	172	
	501 이상	200	
산업용	1톤당	109	

[별표 3]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m³/일)

구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 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 기존 건 축물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 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봄		
						7	18	-			
						11	22	11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 <10 미부과
								7	15	5	(A)+(B)+(E) >10 초과량 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 수 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4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m³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1회의 신축,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bigcirc \text{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triangleright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triangleright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22원	15원	137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945원	1,125원	16,0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11원	150원	1,161원

[별표 8]

중수도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2항)

구분 업종	감 면 비 율		비 고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일 반 용	50퍼센트	20퍼센트	
대중탕용	50퍼센트	20퍼센트	
산 업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